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65호 2020. 5. 14.(목)

## 공 고

○ 사천시 공고 제637호 2020/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# 사 천 시 공 보

제665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637호

## 2020/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

우리 시 「2020/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및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5월 14일

# 사 천 시 장

### 1. 승인조건

- 가.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협의를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.
- 나.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어업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.
- 다.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견·발생되는 경우 그 민원 및 어업 분쟁을 해소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라. 승인된 수면에 대해서는 여객선 등 선박의 항로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마. 대체개발시 합산·분할 어장의 어업권자 동의를 완료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바. 신규개발, 재개발, 대체개발시 기존 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청소 완료를 확인한 후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65 호

- 사. 신규개발, 재개발, 대체개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하며, 어류등양식(가두리식)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어장은 재해대책명령(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)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.
- 아.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어장면적 및 수면의 한계,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.
- 자.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차.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「수산업법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·재개발하여야 하며, 재개발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, 양식어장과의 중첩,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면허 처분하여야 한다.
- 카. 정치망어업은 보호구역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.
- 타. 위(가~카)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2020/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어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.

## 2. 2020/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

어업명칭	어업종류 (양식방법)	수면 위치	면적 (ha)	승인 여부	비고
총계	5건		233.5		
마을어업	마을어업	서포 중촌	40.00	승인	마을어업 사천 제25-1호 기간만료 재개발
		서포 선전	81.50	승인	마을어업 사천 제25-2호 기간만료 재개발
		서포 비토	24.00	승인	마을어업 사천 제25-3호 기간만료 재개발
		서포 조도	78.00	승인	마을어업 사천 제26호 기간만료 재개발
패류양식	바닥식 (살포식)	서포 다평	10.00	승인	패류양식 사천 제15호 기간만료 재개발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65 호

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6.1.4.>

##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20일
------	-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 (여권번호)
	국 적	
	주 소	

배우자 및 직계비속	성 명	생년월일
	성 명	생년월일
	성 명	생년월일
	성 명	생년월일

개발계획 내용	어업의 종류	양 식 방 법
	포획물·채취물 또는 양식물	
	수면의 번호 제 호	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: ha 수심: m
	수면의 위치	

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및 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사천시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# 사 천 시 공 보

제 665 호

(뒤쪽)

첨부서류

1. 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
  - 가. 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(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) 1부
  - 나.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(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) 각 1부
  - 다.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) 1부
  - 라.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(「수산업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) 1부
  - 마.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
2. 「수산업법」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
  - 가.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(「수산업법」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)
  - 나. 내만(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) 양식어장의 위해 이설 계획(「수산업법」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)
  - 다.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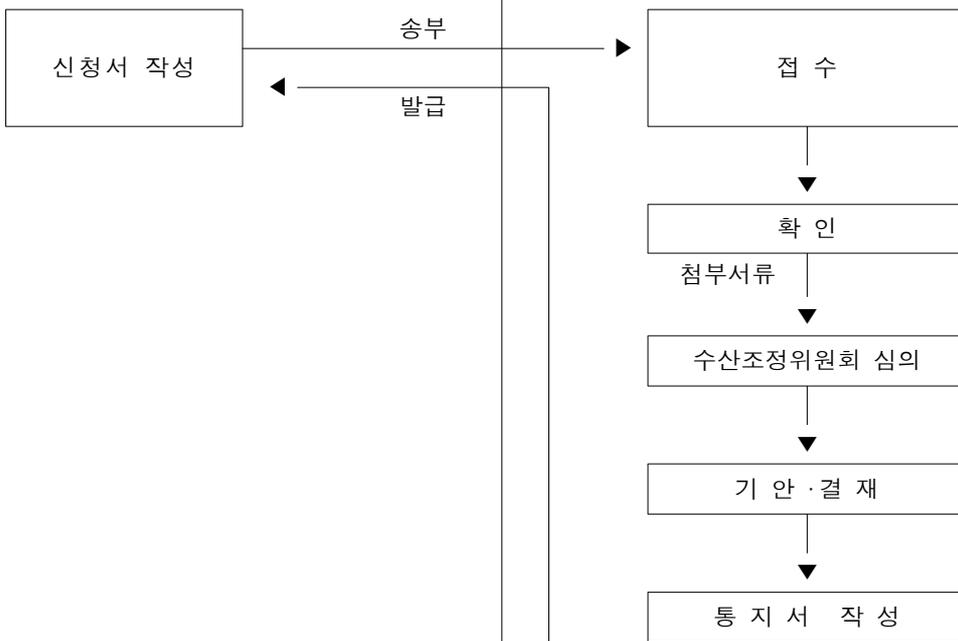
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

처 리 기 관

해양수산부, 시·군·구



※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「수산업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.